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06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양부남・김현정・민병덕
민형배・안도걸・이강일
이해식・정준호・조계원
채현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징계 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 라. (생 략) <신 설> <신 설> 2.·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2.·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